

의안처리상황표

의안번호	17
건명	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발의자	성북구청장
발의연월일	2026년 8월 12일
심사위원회	행정기획위원회
의결결과	2026년 9월 7일 제32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원안가결
이송연월일	2026년 9월 8일
공포년월일 및법률번호	년 월 일 조례 제 호

<요지>

가. 상위법령인 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및 「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소멸시효 완성 시 자금 처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.

나. 서울시 통합 플랫폼(서울페이+) 연계 및 자치구 간 운영 기준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가 일괄 추진하는 사항으로, 소멸시효가 완성된 잔액의 처리 및 상품권 운영 이자의 구 세입 귀속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.

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

성 북 구
(지역경제과)

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7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 : 2026년 8월
제출자 : 성북구청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상위법령인 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및 「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소멸시효 완성 시 자금 처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.
- 나. 서울시 통합 플랫폼(서울페이+) 연계 및 자치구 간 운영 기준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가 일괄 추진하는 사항으로, 소멸시효가 완성된 잔액의 처리 및 상품권 운영 이자의 구 세입 귀속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할인보전금의 정의 규정 신설(안 제2조의5호)
- 나. 구 재정 자금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 세입처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자의 귀속 규정 신설(안 제4조의2제3항)
- 다. 현행 조례상 규정된 바 없어 구민 불편 및 법적 공백이 예상되는 상품권 소멸시효 및 잔액의 처리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4조의3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
- 2) 「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
나. 예산조치 : 본 개정안은 재정지출을 수반하지 않음

다. 협의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

- 1) 입법예고 : 2026. 7. 9. ~ 2026. 7. 29. (20일간)
- 2) 입법예고 방법 :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
 - 결과 : 원안동의 및 디지털 취약계층 이용편의 개선 요구 1건
 - 검토결과 : 디지털 취약계층이 지역화폐 이용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서울시 및 서울페이 운영사에 편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 및 협의하겠음.
- 3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- 4) 비용추계 등 자료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
- 5) 인권/부패/성별/아동 영향평가 : 입법예고 기간 중 실시
 - 인권영향평가 결과 : 원안동의
 - 부패영향평가 결과 : 원안동의
 - 성별영향평가 결과 : 개선사항 없음
 - 아동영향평가 결과 : 대상 아님

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“할인보전금”이란 사용자가 상품권을 구매할 때 할인비율에 따라 국가,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.

제4조제3항 중 “서울특별시 성북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”를 “구”로 한다.
제4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제1항에 따라 상품권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구의 세외수입으로 귀속한다.

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3(소멸시효 및 잔액의 처리) ① 상품권의 소멸시효는 구매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.

-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의 잔액 중 사용자가 구매 시 부담한 금액(이하 “본인부담금”이라 한다)을 사용자의 계좌로 환급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계좌의 미등록·해지 또는 정지 등으로 환급할 수 없는 경우, 구청장은 사용자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사용자는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.

④ 구청장은 제3항의 기간 동안 환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상품권의 본인부담금을 구의 세외수입으로 귀속한다.

⑤ 구청장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의 할인보전금 중 구의 재원 분담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의 세외수입으로 귀속한다.

제5조제7항 중 “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의2”를 “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의2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제2호다목 중 “「복권 및 복권기금법」 제2조제1호”를 “「복권 및 복권기금법」 제2조제1호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환급되지 아니한 본인부담금과 할인보전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~ 4. (생략) <u><신설></u>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<u>“할인보전금”이란 사용자가 상품권을 구매할 때 할인비율에 따라 국가,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.</u>
제4조(상품권의 발행) ①·② (생략) ③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<u>서울특별시 성북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</u> 일원으로 하되,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. ④ (생략)	제4조(상품권의 발행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구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4조의2(상품권의 자금관리) ①·② (생략) <u><신설></u>	제4조의2(상품권의 자금관리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제1항에 따라 상품권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구의 세외수입으로 귀속한다.</u>
<u><신설></u>	<u>제4조의3(소멸시효 및 잔액의 처</u>

리) ① 상품권의 소멸시효는 구매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의 잔액 중 사용자가 구매 시 부담한 금액(이하 "본인부담금"이라 한다)을 사용자의 계좌로 환급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계좌의 미등록·해지 또는 정지 등으로 환급할 수 없는 경우, 구청장은 사용자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사용자는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.

④ 구청장은 제3항의 기간 동안 환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상품권의 본인부담금을 구의 세외수입으로 귀속한다.

⑤ 구청장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의 할인보전금 중 구의 재원 부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의 세외수입으로 귀속한다.

제5조(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) ① 제5조(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) ①

~ ⑥ (생 략)

⑦ 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등록
이 취소된 자가 등록이 취소된
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
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
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의2
에 따라 가맹점으로 재등록 할
수 없도록 할 수 있다.

제6조(가맹점 준수사항) ① 개별
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
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(생 략)

2.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
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
전을 요청하는 행위

가.·나. (생 략)

다. 「복권 및 복권기금법」
제2조제1호에 따른 복권
및 타 상품권의 판매를 통
하여 수취한 상품권

② (생 략)

~ ⑥ (현행과 같음)

⑦ -----

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
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의
2-----
-----.

제6조(가맹점 준수사항) ①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

가.·나. (현행과 같음)

다. 「복권 및 복권기금법」
제2조제1호-----

② 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금 관리 및 이용자 보호라는 서울특별시 개정 사항 취지 부합 및 전체 자치구 간의 통일성을 위해 일괄 추진되는 필수 정비 사항임.
- 소멸시효 및 잔액의 처리 규정 신설에 따른 자동환불 처리는 구 예산을 추가적으로 편성하여 지출하는 것이 아닌, 구민이 직접 부담하여 상품권 자금 관리 계정에 예치되어 있던 ‘본인부담금’을 구민에게 반환하는 회계적 절차로 비용추계서 작성을 제외함

4. 작성자

안전생활국 지역경제과장 최종삼